



# 회장선거관리규정

한국학생승마협회

# 회장선거관리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학생승마협회(이하 ‘본 협회’ 라 함)가 대한승마협회 전국 규모연맹체 운영규정 제10조(임원선출)에 따라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(이하 ‘회장’ 이라 함)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3 조(선거관리)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본 협회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에서 관장한다.

제 4 조(선거권) 본 협회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지명한 대리인은 (이하 ‘선거권자’ 라 한다.)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.

제 5 조(피선거권)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.

## 제2장 후보자 등록

제 6 조(후보자 등록)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12일 전부터 10일전 까지 2일간 위원회가 지정 접수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2호 서식) 1부
2. 이력서 1부
3. 회장후보자 3천만원 기탁금 납입증명서(이체영수증)1부<개정 2024. 12. 30.>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 등록자에게 회장후보자 등록부(별지 5호 서식)에 등재 후 접수증(별지 6호 서식)을 교부한다.

③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전일까지 사퇴하며, 회장의 직무는 부회장이 대행한다.

④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 사퇴가 된다.

제 7 조(등록 무효) 회장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전국규모연맹체 운영규정 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.

제 8 조(후보자 사퇴) 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

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(별지 7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제9조(공고) ①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선거일 12일전에 별첨 1의 양식에 의거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한다.

1. 제6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었을 때
2. 제7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
3. 등록된 후보가 사퇴한 때

③ 제2항의 제1호의 공고는 별지 서식 8호에 의해 마감일 다음날 후보자 명단을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선거

제10조(선거일 공고) 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12일전에 선거일을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대의원명부 작성 및 열람) ① 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포함한 대의원 명부(별지 9호 서식)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는 누구든지 대의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.

제12조(서신 및 광고)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,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.

제13조(후보자 연설) ① 회장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총회장에서 5분 내외로 후보자로서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. 단,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정견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한다.

② 제1항의 후보자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서에 따른다.

③ 후보자 기호는 등록된 순서 이다.

제14조(진행순서) 선거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.

1. 선거안건의 부의선언
2. 회장 후보자의 정견발표
3.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
4. 감표위원 선정
5. 투표
6. 개표
7. 당선자 결정
8. 당선 선포

제15조(투표방법)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연기한 투표용지(별지 10호 서식)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.

② 선거권자는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.

③ 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.

④ 선거권자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(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).

제16조(투표용지) ① 투표용지(별지 10호 서식)는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.

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·성명과 본 협회 직인을 기재·날인하여야 한다.

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“1, 2, 3”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.

제17조(감표위원 선정) 총회의장은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 2인을 당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1명과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선정한다.

제18조(개표방법)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.

② 개표는 감표위원이 실시한다.

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.

1. 투표수의 확인
2. 무효 투표지의 구분

### 3. 후보자별 집계

제19조(무효투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.
  2.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 한 것.
  3.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.
  4. ○(또는 투표도장)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.
  5. ○(또는 투표도장)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.
  6.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.
-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0조(선거 참관) 감표위원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개표결과 보고서 작성)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(별지 11호 서식)를 작성 날인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당선결정

제22조(당선 선포) 전국규모연맹체 운영규정 제10조(임원의 선출)에 따라 회장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해야 한다.

제23조(당선 무효) 회장 당선인이 선거일 후에 전국규모연맹체 운영규정 제 1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.

제24조(회장 당선인 공고) 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25조(선거의 중립성)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제26조(위원회 구성)

- ①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.

- ③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호선하되 본 협회의 임직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

## 제5장 보 칙

제27조(재선거)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선거비용)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협회에서 부담한다. 다만,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(일반원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준용한다. 다만 선거무효나 벌금 등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(기간등)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규정 시행일 이후 첫 회장선거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간 등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단축 또는 연장 시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기탁금의 처리)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,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(연맹, 회)에 귀속한다. 단,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 <2017. 01. 0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(2017. 01. 02)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24. 12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(2024. 12. 30)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 공 고

한국학생승마협회 제 40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

- 년 월 일 ~ 년 월 일 시까지

2. 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

3. 회장 선거

- 일 시 : 년 월 일 시

- 장 소 :

년 월 일

한 국 학 생 승 마 협 회

선 거 관 리 위 원 장

##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

---

---

- 성 명 : (한자 : )
- 생년월일 : (주민등록번호 : )
- 주 소 :
- 직 업 :
- 연 락 처 : (자택: ) (직장: )  
(핸드폰: ) (e-mail: )
- 이력사항 : 첨부(사진 포함)

상기 본인은 한국학생승마협회 제 40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 
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입후보자 : (인)

선거관리위원장 귀하



[별지 제4호 서식]

# 이 력 서

사 진 (3×4)	성 명		한 문	
			영 문	
	주민등록번호			
	병역사항			
	상벌사항			

본 적(출생지)	
현 주 소	

	기 간	학 교 명	전공학과	학 위
학 력				

	기 간	소 속	직 위 및 직 급
주 요 경 력			



## 제 40대 회장선거후보자 접수대장

### ◎ 후보자

- 성명 : (한자 : )
- 생년월일 : (주민등록번호 : )
- 주소 :
- 직업 및 직위 :
- 접수일자 : 년 월 일
- 접수번호 :

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.

-----절-----취-----선-----

### 접 수 증

- 후보자성명 : (한자 : )
- 생년월일 : (주민등록번호 : )
- 주소 :
- 직업 및 직위 :
- 접수일자 : 년 월 일
- 접수번호 :

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선거관리위원장

(인)

##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

- 후보자성명 : (한자 : )
- 생년월일 : (주민등록번호 : )
- 주소 :
- 직업 및 직위 :
- 접수번호 :
- 사퇴사유 :

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후보자 (인)

선거관리위원장 귀하

## 회장후보자 등록 공고

년 월 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제 40대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선거에 있어 회장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 합니다.

기호	성 명	생년월일	직업 및 직위	비고

년 월 일

한 국 학 생 승 마 협 회  
선 거 관 리 위 원 장



연번

## 제 40대 한국학생승마협회장 투표용지

감 표 위 원	
성 명	서 명

한국학생 승마협회

기호	1	2	3	4
후 보 자 성 명				
기표란				





## 제 40대 회장 당선인 공고

년 월 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 제 40대 한국  
학생승마협회 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당 선 인

- 성 명 :
- 생 년 월 일 :
- 직업 및 직위 :

년 월 일

한 국 학 생 승 마 협 회  
선거관리위원장